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03-1288366
신청일	2021-03-31 21:36:43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수원남부 경찰서장 오상택에게 이의신청

내용

사건번호: 수원남부경찰서 2021-001246
고소인/이의신청인: 김명호
피의자: 박형주(아주대 총장), 아주대 시설팀(031-219-2088)
피신청자: 류정길 순경(ryuryu84@police.go.kr 031-899-0128), 최은영 경위
제목: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직권남용)

위 사건 각하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서 서장 오상택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한다.

다 음
1. 첫번째 불송치 이유에 대하여
고소인은 고소장에는 물론, 담당자 류정길 순경이 쓸데없는 전화하였을 때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판결]
“그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에 의하여, 아주대측은 수원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무위탁 받아 집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원길과 그 팀장 최은영은 얼마나 단단한 돌대가리들인지 여전히 ‘공무원 지위가 생겼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위법 개소리(입증자료1)
* 법집행하는 사법수사관으로서 법리는커녕 한글 독해력도 없는 이런 돌대가리들이 수사권 지-랄인지… 정말 한심하고 국민이 불쌍타

2. 두번째 불송치 이유에 대하여
류원길과 최은영은 아주대측의 거짓말들(동파방지, 논술고사, 시설보수 청소 등) 아무런 증거들도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이런 경찰수사관 년놈들한테는 욕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1) 동파방지? 설사 동파위험이 있더라도 수리 감수하고 관리해야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아주대측 의무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한겨울에 동파 무서워서 수도국이 니들 집의 수도시설 잠갔냐? 이 병-신들아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동파 핑계로 아주대측은 오후5시-다음날 오전7시까지 폐쇄한다는 공고까지 붙이고는(입증자료2) 동파위험 없는 한낮에도 토, 일, 공휴일에는 하루종일 잠금으로써, 자체규정도 위반한 개만도 못한 족속들이다.
(2) 논술고사? 고소인은 그날 화장실 잠금에 대하여 문제 삼은 적 없다. 근데 왜 언급하고 지-랄? 쟁점 흐리려는 수작이냐?
(3) 시설보수, 청소? 돌대가리들 병-신육갑질하고 자빠졌다. 류원길 최은영, 이 돌대가리들아! 니들은 시설보수, 청소를 문 잠가놓고 하냐?

3. 결론
아주대측은 사인이지만 수원시 12억 지원 협약에(입증자료3)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고 있으니 법률에 의해 공무원이다.
협약서에 의하면(입증자료4), 수원시민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제설작업은커녕, 화장실문까지 잠그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자세한 것 => http://seokgung.org/hunso/yes.htm#eui

2021.3.31

입증 자료
1.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2. 아주대측 화장실 사진
3. 12억 지원 내역
4. 수원시와의 협약서

첨부 파일 입증자료4.pdf 입증자료3.pdf 입증자료2.jpg 입증자료1.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3-1358305
접수일	2021-03-31 21:36:43
담당자(연락처)	곽근이(031-899-0279)
처리예정일	2021-04-20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1-04-12 15:06:10
처리결과 (답변내용)	김명호님 안녕하십니까?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 경위 최은영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원남부경찰서 2021-001246호 사건 불송치 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신문고는 제보, 신고, 진정 등의 민원 창구로 이의신청의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경찰수사규칙 제113조에 의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불송치결정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위 안내드린 방법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피료한 경우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류정길 경장(031-899-0128)이나 이의신청 담당자인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송재성 순경(031-899-03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한마디 더	
최은영 돌대가리 병신아 니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원남부경찰서 2021-001246호 사건 불송치 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자백했듯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검찰에 사건 송치해라 뭔 잔말이 많냐?	

인쇄